

임상실습(연수) 협약서

대구시의 영남대학교의료원(이하 “기관” 이라한다)과 대구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의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다.

- 본 협약은 기관의 기술연마 숙련과정과 현장업무 수행기회를 대구대학교 학생에게 제공하고, 대학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발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 협약은 체결일자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단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- 대학은 실습일정을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, 실습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- 기관은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협력을 제공한다.
- 현장실습은 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.
- 대학은 기관과 협의된 실습비를 현장실습 종료 전 기관명의로 입금한다.
- 대학은 실습생에 대한 보수, 금품, 숙박 기타 일체를 의료원에 요청하지 않는다.
- 실습생은 의료원 복무규정 및 부서 근무수칙을 준수 한다.
- 기관은 실습생이 무단결석(3일) 또는 의료원에 물적·심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실습중지, 취소 등을 조치 할 수 있다.
- 실습생은 임상(현장)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며, 실습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(감염, 일반)에 대하여 의료원에 책임을 묻지 않고, 발생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한다.
-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,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원에 물적·심적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한다.
-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관과 대학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1월 20일

기관명 : 영남대학교의료원
주 소 :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로

대표자 : 김 종 연



기관명 : 대구대학교
주 소 :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 201

대표자 : 박순진

대구대학교총장